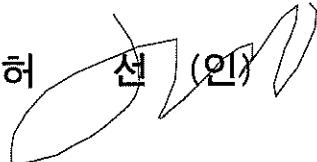


자체 학술용역심의 의견서

용 역 명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 연구		
연 구 기 간	2018. 5. ~ 2018. 7(3개월)		
주 관 부 서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담 당 (전화번호)	정연주 (2133-7352)
계 약 방 법	수의계약	금 액	30,000천원
과제필요성	서울시민복지기준 1차계획이 2018년에 종료됨에 따라 2차계획의 수립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계약방식의 적정성 여부	연구의 연속성과 기존연구와의 관련성, 연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용역비/용역기간 적절성	용역기간과 비용이 사안에 비해 다소 적으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음		
과업내용의 정확성 여부	시민복지기준운영위원회에서 발간한 평가보고서에서 제안한 2기의 운영방향에 따라 적정하게 과업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평가보고서에 준해서 과업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임		
중앙정부 소관사항 여부	시민복지기준 2차계획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고려해야 함		
유관기관 협의필요성 여부	서울복지재단에서 시민복지기준선성파평가연구(2017)를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복지재단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검토의견 : 적 정

작성자 : 허 선 (인)



자체 학술용역심의 의견서

용 역 명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 연구		
연 구 기 간	2018. 5. ~ 2018. 7(3개월)		
주 관 부 서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담 당 (전화번호)	정연주 (2133-7352)
제 약 방 법	수의계약	금 액	30,000천원
과제필요성	2018년 시민복지기준 사업 완료에 따른 향후 사업방향 및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임		
계약방식의 적정성 여부	기간, 예산,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고려할 때 계약방식에 문제 없음		
용역비/용역기간 적절성	연구범위에 비해 용역기간이 다소 짧은 듯하나, 사업일정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됨.		
과업내용의 정확성 여부	과업내용이 잘 정리됨. 한 가지 추가하면 1단계 사업 이후 달라진 서울시의 시민복지환경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하는 부분이 추가되었으면 함		
중앙정부 소관사항 여부	-		
유관기관 협의필요성 여부	-		

검토의견 : 적정 (예:적정, 부적정, 조건부시행)

작성자 : 홍인옥 인

자체 학술용역심의 의견서

용 역 명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 연구		
연 구 기 간	2018. 5. ~ 2018. 7(3개월)		
주 관 부 서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담 당 (전화번호)	정연주 (2133-7352)
계 약 방 법	수의계약	금 액	30,000천원
과제필요성	2단계 서울시민복지기준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적절한 연구임		
계약방식의 적정성 여부	전문성과 시의성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이 불가피함. 현재의 상황에서는 적정함		
용역비/용역기간 적절성	용역기간과 용역비가 다소 적은 것은 사실이나, 시의성 측면에서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됨. 현재의 상황에서는 적절함		
과업내용의 정확성 여부	과업내용이 필요한 컨텐츠를 정확히 반영하였음		
중앙정부 소관사항 여부	중앙정부의 소관사항은 아님		
유관기관 협의필요성 여부	사전에 유관기관과의 협의는 필요치 않아 보이나, 연구결과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검토의견 : 적정 (예:적정, 부적정, 조건부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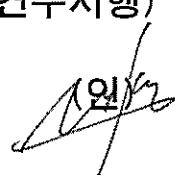
작성자 : 주영수

자체 학술용역심의 의견서

용 역 명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 연구		
연 구 기 간	2018. 5. ~ 2018. 7(3개월)		
주 관 부 서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담 당 (전화번호)	정연주 (2133-7352)
계 약 방 법	수의계약	금 액	30,000천원
과제필요성	시민복지기준의 2018년 이후 추진 방향과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성이 높음		
계약방식의 적정성 여부	기준의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서울연구원에서의 연구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용역비/용역기간 적절성	적절함		
과업내용의 정확성 여부	적절함		
중앙정부 소관사항 여부	광역 지자체의 자체적 프로그램으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서울시의 자체 추진 필요성 있음		
유관기관 협의필요성 여부	복지 영역 이외에도 기준의 주택, 보건, 교육 등 관련분야의 정책 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검토의견 : 적정 (예:적정, 부적정, 조건부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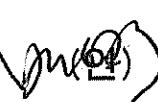
작성자 : 남기철



자체 학술용역심의 의견서

용 역 명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 연구		
연 구 기 간	2018. 5. ~ 2018. 7(3개월)		
주 관 부 서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담 당 (전화번호)	정연주 (2133-7352)
계 약 방 법	수의계약	금 액	30,000천원
과제필요성	서울시민복지기준 1단계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변화된 환경에 맞춰 수정.보완이 제기되어 2단계 추진 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함		
계약방식의 적정성 여부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사업의 성격,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으로 1단계 연구부터 운영까지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서울연구원과의 수의계약이 적정함.		
용역비/용역기간 적절성	서울시민복지기준 성과평가 등 선행 연구.보고에 기초함으로 용역비, 용역기간은 적정함.		
과업내용의 정확성 여부	과업내용은 용역의 목적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음.		
중앙정부 소관사항 여부	중앙정부 소관사항이 아님.		
유관기관 협의필요성 여부	사전 유관기관 협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중간보고 시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검토의견 : 적정 (예 적정, 부적정, 조건부시행)

작성자 : 배형우 

자체 학술용역심의 의견서

용 역 명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 연구		
연 구 기 간	2018. 5. ~ 2018. 7(3개월)		
주 관 부 서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담 당 (전화번호)	정연주 (2133-7352)
계 약 방 법	수의계약	금 액	30,000천원
과제필요성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을 위해 기준, 지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으로 필요한 과제임.		
계약방식의 적정성 여부	시정 전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민복지기준 특성으로 볼 때 수행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과제의 시의성,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이 적정함.		
용역비/용역기간 적절성	과제 내용에 비해 연구기간이 짧아 보이나 기존 연구를 활용하고 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회의와 병행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과업내용의 정확성 여부	과업의 내용이 목적을 정확히 반영함.		
중앙정부 소관사항 여부	중앙정부 소관사항 해당없음.		
유관기관 협의필요성 여부	용역 자체에 서울시 외 유관기관 협의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 _____ (예: 적정, 부적정, 조건부시행)

작성자 : 김복재